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업 무 지 침

2014. 3.

국토교통부

목 차

제1장 총칙	1
제1절 지침의 목적	1
제2절 적용범위	1
제3절 용어정의	1
제2장 시범사업 추진절차	3
제1절 추진목적	3
제2절 추진방향	3
제3절 추진절차	3
제3장 계획수립 단계의 추진방법	7
제1절 기획안 작성	7
제2절 마스터플랜 계획자 선정	7
제3절 마스터플랜 수립	8
제4장 설계 및 시공 단계의 추진방법	12
제1절 기본방향	12
제2절 설계단계	12
제3절 시공단계	14
제5장 추진협의회 운영	16
제1절 추진협의회 구성	16
제2절 추진협의회 역할 및 운영	17
제6장 민간전문가 운영	18
제1절 민간전문가 자격 및 위촉	18
제2절 민간전문가 역할 및 권한	19
제7장 행정지원	20
제1절 행정의 역할	20
제2절 예산집행의 범위 및 기준	21
제8장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22
제1절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의 추진	22
제2절 모니터링 절차 및 방법	22
제3절 시범사업 성과관리	25
제4절 시범사업 평가	25
제5절 시정조치	25

제1장 총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건축기본법」 제22조(건축디자인시범사업 실시)에 의해 수행하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제2절 적용범위

1-2-1 이 지침은 시범사업의 추진절차 및 방법,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민간전문가 운영,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등에 적용한다.

1-2-2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건축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업무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3절 용어정의

1-3-1 ‘국토환경디자인’이란 국토와 도시공간 등에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1-3-2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1-3-3 ‘공공건축·공공공간 통합 마스터플랜’(이하, “마스터플랜”이라 한다)이란 도시 주요영역의 통합이미지 형성과 경관향상 및 관련 건축·도시사업간 연계강화를 위해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의 물리적 통합과 더불어 장소, 콘텐츠, 공간차원의 관리방향과 개선 및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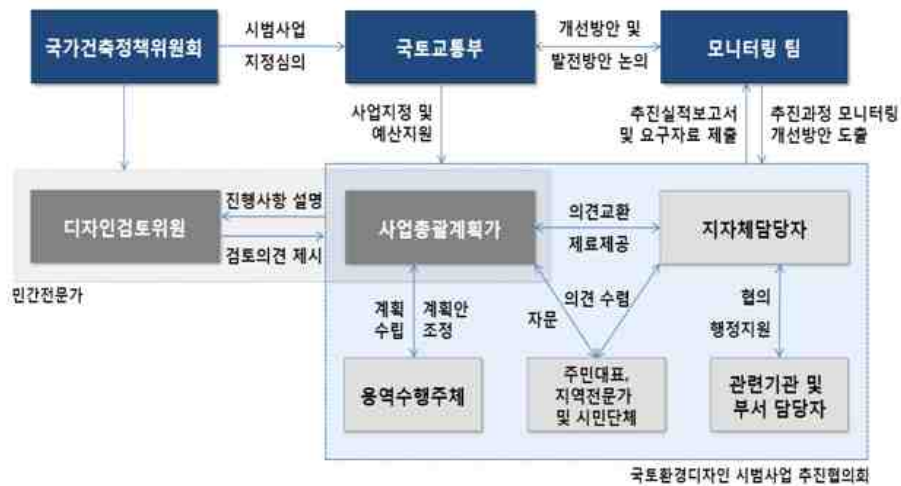
1-3-4 ‘추진협의회’란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성하는 조직으로 대상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 행정, 전문가 등이 참여한 추진주체를 말한다.

1-3-5 ‘디자인총괄계획가 제도’란 디자인총괄계획가가 기획단계부터 마스터플랜 수립, 설계, 시공, 유지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조정하고 행정이 이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3-6 '디자인검토 제도'란 디자인검토위원이 추진과정의 적정성 및 합리성에 대한 디자인검토회의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단계별 조연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3-7 '민간전문가'란 디자인총괄계획가 제도의 디자인총괄계획가와 디자인검토 제도의 디자인검토위원을 말한다.

1-3-8 '건축디자인기준'은 디자인 자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사결정과 관련한 원칙과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건축·도시 관련 행정담당자, 사업시행자,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등 공공부문 건축 디자인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이 따르거나 참고하여야 할 지침을 말한다.



<그림 1 -1>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관련주체 및 추진체계

제2장 시범사업 추진절차

제1절 추진목적

- 2-1-1 본 시범사업의 목적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디자인 경쟁력 강화와 국토환경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간관리 방향과 공간관리의 전략을 제시하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건축·도시 관련사업간 연계강화와 통합적 도시경관 형성을 도모하는 데 있다.
- 2-1-2 또한 건축·도시·조경·디자인 분야 등의 민간전문가 지원을 통해 사업추진과정에서 마스터플랜 및 디자인 품질확보를 위한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방소도시의 물리적 환경개선, 유휴시설 활용,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에 기여함에 있다.

제2절 추진방향

- 2-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사업의 취지 및 목적을 이해하고 해당지역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통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 2-2-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지속성 확보와 사업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위해 지역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담당공무원 등으로 시범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 2-2-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사업의 일관성 확보와 디자인 품질제고를 위해 디자인총괄계획가 제도와 디자인검토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한다.
- 2-2-4 국토교통부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업추진절차 및 방법, 민간전문가 활용 등 추진관련 기준을 담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업무지침을 제시한다.

제3절 추진절차

- 2-3-1 시범사업 추진절차는 <그림 2-1>과 같으며, 추진단계별로 지침내용을 따른다.
- 2-3-2 (시범사업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 선정위원회의 평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지정한다.

- 2-3-3 (디자인총괄계획가 선정 및 추진협의회 구성)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별 디자인총괄계획가를 선정·위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응모 시 제출한 추진협의회 구성·운영방안을 바탕으로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
- 2-3-4 (시범사업 기획안 작성) 디자인총괄계획가는 추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기획안 작성을 주관한다.
- 2-3-5 (계획단계 1차 디자인검토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스터플랜 수립 관련 발주방식 결정이전에 기획안의 적절성 검토를 위한 디자인검토회의를 개최한다.
- 2-3-6 (마스터플랜 수립방식 및 발주방식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디자인총괄계획가의 의견 및 1차 디자인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마스터플랜 수립방식 및 발주방식을 결정하고,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발주 및 계약한다.
- 2-3-7 (마스터플랜 수립) 디자인총괄계획가는 추진협의회와 협력하여 마스터플랜 수립을 주관한다.
- 2-3-8 (계획단계 2·3차 디자인 검토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스터플랜 수립과정 중 계획안의 적정성 및 합리성 검토를 위한 디자인검토회의를 개최한다.
- 2-3-9 (마스터플랜 확정 및 최종보고서 제출) 디자인총괄계획가는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 2-3-10 (평가 및 설계비 지원여부 결정)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형태로 설계비 지원여부 및 대상사업을 결정한다.
- 2-3-11 (2차년도 설계단계 1차 디자인검토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계 관련 발주방식 결정이전에 발주계획 및 사업추진방식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디자인검토회의를 개최한다.
- 2-3-12 (설계 발주방식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디자인총괄계획가의 의견 및 1차 디자인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 발주방식을 결정하고, 설계용역을 발주 및 계약한다.
- 2-3-13 (설계단계 2·3차 디자인검토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계과정 중 기본설계 확정까지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등의 검토를 위한 디자인검토회의를 2차례 개최한다. 단, 설계진행 중 추가적인 용역을 발주하거나 충실한 계획수립 등을 위해 총괄계획가와 모니터링 연구진의 협의 하에 추가적인 디자인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 2-3-14 (설계단계 4차 디자인검토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시설계과정 중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사업의 기대효과 등의 검토를 위한 디자인검토회의를 개최한다.
- 2-3-15 (설계 확정 및 설계 매뉴얼 제출) 디자인총괄계획가는 설계를 확정하고 사업의 성과확산을 위한 설계 매뉴얼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 2-3-16 (평가 및 계속지원 여부결정)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설계도서와 설계매뉴얼을 바탕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의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 2-3-17 (시공 단계 디자인검토 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공 과정 중 설계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등의 검토를 위한 디자인검토회의를 개최한다.
- 2-3-18 (사업대상지 및 사업내용 변경) 계획수립 과정 중 사업대상지 및 사업내용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하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디자인총괄계획가 및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차년도	계획 단계	시범사업 지정 (국토교통부)
		▽
		디자인총괄계획가 지정, 추진협의회 구성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
		기획안 작성 (디자인총괄계획가, 추진협의회)
		▽
		1차 디자인검토 실시 (디자인검토위원, 모니터링팀)
		▽
		마스터플랜 수립방식 및 발주방식 결정 (디자인총괄계획가, 추진협의회)
		▽
		마스터플랜 수립 (디자인총괄계획가, 용역수행주체, 추진협의회)
		▽
		2·3차 디자인검토 실시 (디자인검토위원, 모니터링팀)
▽		
마스터플랜 확정 및 최종 보고서 제출 (디자인총괄계획가, 용역수행주체, 추진협의회)		
▽		
평가 및 계속지원 여부결정 (국토교통부, 평가위원회)		
▽		

2차년도 이후	설계비 지원 사업 설계 단계	발주방식 및 설계과업내용 수립 (디자인총괄계획가, 추진협의회)
		▽
		1차 디자인 검토 실시 (디자인검토위원, 모니터링팀)
		▽
		설계 발주방식 및 과업내용 결정 (디자인총괄계획가, 용역수행주체, 추진협의회)
		▽
		2·3차 디자인 검토 실시 (디자인검토위원, 모니터링팀)
		▽
		기본설계 확정 (디자인총괄계획가, 용역수행주체, 추진협의회)
		▽
		4차 디자인 검토 실시 (디자인검토위원, 모니터링팀)
		▽
		실시설계 확정 (디자인총괄계획가, 용역수행주체)
		▽
	설계 매뉴얼 제출 (디자인총괄계획가, 용역수행주체, 추진협의회)	
	▽	
평가 및 계속지원 여부결정 (국토부, 평가위원회)		
▽		
시공 단계	설계 사후관리 (디자인총괄계획가, 용역수행주체)	
	▽	
	설계변경에 따른 디자인검토 실시 (국토교통부, 평가위원회)	

<그림2-1>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절차

제3장 계획수립 단계의 추진방법

제1절 기획안 작성

3-1-1 (시범사업 기획안 작성)

- ① 기획안 작성은 시범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시범사업 응모제안서를 구체적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디자인총괄계획가와 협의하여 마스터플랜의 성격, 계획 범위 및 참여주체별 세부역할 등 명확한 과업범위를 설정하고, 디자인총괄계획가는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 기획안을 작성한다.
- ③ 디자인총괄계획가는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의 현황 및 잠재력 분석, 도시기본계획, 경관기본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과 건축·도시 관련 사업현황 및 향후 계획을 분석하고, 경제적인 측면과 공공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마스터플랜의 범위 및 추진방향을 조정한다.
- ④ 시범사업 기획안은 지역의 현황 및 관련사업·계획을 반영한 마스터플랜의 범위 및 수립방향,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발주방식 및 과업지시서 초안 등을 포함한다.
- ⑤ 디자인총괄계획가는 지역주민과 사업성격에 따른 다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조사·과약하여 기획안에 최대한 반영한다.
- ⑥ 디자인총괄계획가 및 추진협의회는 지역의 역사를 비롯한 정주패턴, 건축과 공간의 형태, 생태환경,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유물, 입지특성, 주변도로, 경관, 산업, 인구 등 지역의 여건과 맥락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사전조사를 충실히 수행하여 기획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디자인총괄계획가의 판단에 따라 기획안 작성을 위해 필요한 현황조사, 주민수요조사 등을 별도의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다.

제2절 마스터플랜 계획자 선정

3-2-2 (계획자의 선정)

- ① 디자인총괄계획가는 시범사업 기획안 내용을 토대로 시범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건축가 또는 계획가의 능력과 설계안의 우수성이 반영될 수 있는 발주방식을 검토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디자인총괄계획가의 의견 및 1차 디자인검토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기획안 내용에 부합하는 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디자인총괄계획가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 ③ 계획자의 선정을 위한 발주방식은 디자인총괄계획가의 의견 및 1차 디자인검토회의 결과에 따른다. 단, 행정적인 문제 등으로 이를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디자인검토회의를 개최하여 발주방식을 결정한 후 발주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디자인총괄계획가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시범사업의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수행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3절 마스터플랜 수립

3-3-1 (마스터플랜 수립)

- ① 디자인총괄계획가는 추진협의회, 용역수행주체와 협력하여 대상지역과 관련한 도시계획 등 관련계획 또는 사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주관한다.
- ② 디자인총괄계획가는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의 맥락을 이해하고, 기획안에서 설정된 시범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도록 사업계획과 디자인 방향을 설정한다.
- ③ 마스터플랜에는 도심 주요 영역별 경관개선 및 활성화 전략, 공공건축·공공공간 등을 활용한 거점사업별 기본구상, 계획의 실행 및 관리방안 등이 포함되며, 지역 여건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부분계획인 경관계획 형태나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경관상세계획)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 ④ 디자인총괄계획가는 마스터플랜 수립에 있어서 지역의 공공건축, 공공공간, 유희자산, 역사문화자원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하고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역수행주체 이외에도 시범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 협력적 계획과정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완공 후 시설변경 등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와 유지·관리 주체의 참여를 보장한다.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등의 사업과 연계한 사업비 확보방안, 지구단위계획 및 경관협정 등의 관리방안, 사업별 추진일정 등 마스터플랜의 단계적 실현방안을 성과물에 포함하여야 하며, 마스터플랜이 왜곡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주체에게 합리적 판단근거를 제시한다.

<표 3-1> 공공건축·공공공간 통합마스터플랜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도심 주요 영역별 경관개선 및 활성화 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지 분석 및 주변현황 분석 - 도시기본계획·경관기본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 분석 - 건축·도시 사업현황 및 향후 계획분석 - 경관개선 및 도시활성화 전략 구상 - 주요 영역별 세부전략 구상 : 장소조성 전략, 콘텐츠 확충 전략, 공간 전략 등 - 공공건축·공공공간 통합 마스터플랜 종합 계획도
공공건축, 공공공간 등을 활용한 거점사업별 기본구상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기본전략 구상 - 프로그램 구상 - 공간 구상 <p>(공공건축) 리모델링, 시설 간 복합화 등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개선 및 신축, 프로그램 공유 및 개발 등</p> <p>(공공공간) 공원, 광장 등 오픈 스페이스 정비,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 가로환경개선, 특화거리조성 등</p> <p>(지역유휴자산) 근대건축물, 산업시설 등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건축자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시설 정비 및 디자인개선, 프로그램 개발 등</p>
지속적 실행 및 관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사업추진 계획 : 단계별 추진전략, 거점 사업별 우선순위 등 - 실효성 확보 방안 :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경관협정, 조례 등 건축·도시관련 제도와 연계한 실행방안 (전체 및 거점사업별) - 향후 디자인 관리방안 : 민간전문가 활용, 기존 사업관리 담당자의 연속성, 디자인전담조직 운영 등 시범사업에 대한 디자인관리방안 - 예산확보 방안 : 소요 예산, 예산확보 방안 등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터플랜의 기대효과, 거점 사업별 기대효과 등

3-3-2 (마스터플랜 수립 단계별 디자인검토)

- ① 디자인검토회의는 지방자치단체별 시범사업의 성격 및 일정을 고려하되 최종 평가 2주 전까지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개최하여 총 3차례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2차 디자인검토회의는 용역수행업체 선정 일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② 1차 디자인검토회의는 마스터플랜 계획자 선정을 위한 발주방식 결정 이전에 실시하여 발주방식 및 과업지시서에 디자인검토위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시범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2·3차 디자인검토회의를

실시한다. 단, 2차 디자인검토회의는 용역수행업체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사업 추진경과를 고려하여 디자인검토위원의 전원 참석을 전제로 구체적인 디자인검토회의 일정을 결정하고 회의개최 1주일 이전에 국토교통부에 통보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디자인검토회의에 필요한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디자인검토회의 3일 이전에 관련 자료를 디자인검토위원 및 국토교통부, 모니터링팀에 제출하여 관련자가 디자인검토회의 개최 전에 기획 및 마스터플랜 내용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디자인총괄계획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차 디자인검토회의 자료로서 현황분석, 계획의 범위 및 방향, 향후 추진계획,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식, 과업지시서(안) 등을 포함한 시범사업 기획안을 준비한다. 또한, 2·3차 디자인검토회의 자료로서 마스터플랜 등 계획 내용, 추진협의회 운영 현황, 향후 추진계획 등을 준비한다.
- ⑥ 디자인검토위원은 1차 디자인검토회의에서 현황분석의 충실성, 계획범위 및 방향설정 등의 적절성, 발주계획(업체의 자격요건, 팀 구성방식 등 포함)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 ⑦ 디자인검토위원은 2·3차 디자인 검토회의에서 이전 디자인검토 결과의 반영 여부, 계획안의 적정성·합리성, 계획수립과정의 협력적 설계진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 ⑧ 디자인검토위원은 디자인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고, 디자인총괄계획가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 ⑨ 디자인검토회의에는 긴밀한 논의를 위해 참석자를 디자인총괄계획가, 디자인검토위원, 용역수행주체, 추진협의회 위원, 담당 공무원 등으로 최소화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관련 업무협의 등과 병행하지 않도록 한다.
- ⑩ 디자인검토회의는 디자인총괄계획가의 기획안 및 마스터플랜 등 진행사항 설명, 참여 주체간 토론 순으로 진행한다.
- ⑪ 필요시 디자인검토회의 후 디자인검토위원과 모니터링팀이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조정하며, 디자인검토위원은 디자인검토회의 후 1주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모니터링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⑫ 모니터링 팀은 회의내용 및 결과를 바탕으로 모니터링 의견을 작성하고, 검토의견서를 취합하여 디자인검토 결과서를 작성한다.
- ⑬ 국토교통부는 디자인검토위원의 의견과 모니터링 의견 등을 종합한 디자인검토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디자인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보완방안을 수립하여 추후 계획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표 3-2> 단계별 디자인검토 주요내용

구 분		디자인검토 내용
기획단계 (1차 검토)	현황분석의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현황분석 및 잠재력 분석의 충실성 ◦ 도시기본계획, 경관기본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과 건축·도시 관련 사업현황 및 향후 계획 분석의 실효성
	계획범위 및 방향설정 등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취지와와의 부합성 ◦ 지역의 현황 및 관련사업·계획을 반영한 마스터플랜의 범위 및 방향 설정의 적절성 ◦ 지역의 수요 및 현황에 따른 기능의 타당성 및 규모의 적정성 검토 ◦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 사업의 파급효과 ◦ 전체 사업예산 편성내용
	발주계획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방식의 타당성 ◦ 과업내용, 응모업체 자격조건 등 과업지시서 내용의 적절성
마스터플랜 수립단계 (2·3차 검토)	디자인검토 결과 반영여부 검토	-
	계획안의 적정성·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취지 및 시범사업 기획안과의 부합성 ◦ 사업규모 및 기능, 형태에 따른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 타 건축·도시 조성관련 사업으로의 시너지효과 가능성 ◦ 사업의 실현가능성 ◦ 향후 실행·관리방안의 합리성
	계획수립과정의 협력적 설계진행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관련 각 분야별 전문가와의 협력적 설계체계구축 현황, 각 분야 전문가 의견 반영 과정 및 결과 ◦ 추진협의회 운영 내용 및 결과

제4장 설계 및 시공 단계의 추진방법

제1절 기본방향

- 4-1-1 설계 및 시공단계의 관리는 기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단계의 의도와 내용이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프로세스 개선의 선도 사례를 구축하고, 그 성과를 타 지방자치단체에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4-1-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전 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의 추진방향에 따라 디자인총괄계획가, 디자인검토위원 등의 민간전문가와 추진 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사업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한다.
- 4-1-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계단계에서의 발주방식 및 과업지시서 결정, 상위계획에서 결정한 주요사항의 변경, 시공단계에서의 설계변경(단, 경미한 경우는 제외)의 경우 반드시 디자인총괄계획가의 검토와 승인을 받도록 한다.
- 4-1-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수립 기간 중 해당 시범사업 결과의 일부를 매뉴얼(시방서) 등으로 일반화하여 시범사업의 성과가 타 지자체에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시범사업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매뉴얼(시방서) 등의 제작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절 설계단계

4-2-1 (설계자 선정)

- ① 디자인총괄계획가는 마스터플랜 등 상위계획의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발주방식 검토 및 과업지시서 작성을 총괄·조정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디자인총괄계획가 의견 및 디자인검토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마스터플랜의 내용에 부합하는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디자인총괄계획가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 ③ 설계자의 선정을 위한 발주방식은 디자인총괄계획가의 의견 및 디자인검토회의 결과에 따른다. 단, 행정적 문제 등으로 이를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디자인검토회의를 개최하여 발주방식을 결정한 후 발주절차를 진행한다.

4-2-3 (설계단계 디자인검토회의)

- ① 계속사업의 디자인검토회의는 지방자치단체별 시범사업의 성격 및 일정을 고려 하되 실시설계 확정까지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총 4회 이상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2차와 4차 디자인검토회의는 용역수행업체 선정 일정과 사업진행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② 1차 디자인검토회의는 설계수행자 선정을 위한 발주방식 결정 이전에 실시하여 발주방식, 과업지시서 등에 디자인검토위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 ③ 2·3차 디자인검토회의는 기본설계 확정 이전단계에서 마스터플랜과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한다. 단, 충실한 계획수립 등을 위해 총괄계획가와 모니터링 연구진의 협의 하에 추가적인 디자인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4차 디자인 검토회의는 실시설계단계에서 기본설계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때 기본설계 수립주체는 실시설계단계에서 필요한 디자인검토 시기와 시공단계에서 필요한 사후 설계관리 시점을 제시한다.
- ⑤ 마스터플랜,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의 계획수립 주체가 다를 경우, 상위계획 수립 주체가 하위계획과 관련한 디자인검토회의에 검토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 ⑥ 디자인검토위원은 1차 디자인검토회의에서 발주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방식의 적정성, 협력적 사업추진체계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디자인 검토회의 자료로서 발주방식 및 과업지시서, 사업성과의 구체화 방안, 단계별 추진계획 등을 준비한다.
- ⑦ 디자인검토위원은 2·3차 디자인검토회의에서 사업의 일관성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협력적 사업추진체계, 사업의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디자인검토회의 자료로서 설계안, 관련주체 의견수렴 내용 및 반영 사항, 향후 추진계획 등을 준비한다.
- ⑧ 디자인검토위원은 4차 디자인검토회의에서 사업의 일관성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디자인검토회의 자료로서 실시설계안, 향후 추진계획 등을 준비한다.
- ⑨ 디자인검토회의의 운영방식은 계획수립 단계별 디자인검토회의(3-3-2)의 운용 방식에 따른다.

<표 4-1> 설계단계 디자인검토 주요내용

구분	디자인검토 내용	
설계발주단계 (1차)	발주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격에 따른 발주방식의 타당성 ◦ 과업범위 및 과업내용의 적정성 - 기 수립된 시범사업 마스터플랜과의 연계성, 매뉴얼 및 시방서 등 시범사업 성과의 구체화 방안 등
	사업추진방식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추진계획의 타당성

	협력적 사업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주체별 역할 ◦ 다양한 주체의 의견수렴 방법
기본설계 (기본계획)단계 (2·3차)	사업의 일관성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사업의도와의 부합성 ◦ 마스터플랜, 기본설계 등 상위계획과의 적합성·연계성
	협력적 사업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과정의 공유 등 주민과의 소통 여부 ◦ 다양한 주체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사업의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사업으로 시너지효과 창출의 가능성
실시설계단계 (4차)	사업의 일관성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사업의도와의 부합성 ◦ 마스터플랜, 기본설계 등 상위계획과의 적합성·연계성
	사업의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뉴얼, 시방서 등 사업성과의 구체화 내용
설계변경 발생시 (필요시)	사업의 일관성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사업의도와의 부합성 ◦ 마스터플랜, 기본설계 등 상위계획과의 적합성·연계성
	변경사항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사항의 타당성 및 적절성

제3절 시공단계

4-3-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시설계 이후 시공단계에서 기본설계 수행 설계자가 설계 사후관리를 수행하여 작성된 계획안대로 시공이 진행되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4-3-2 설계 사후관리를 위한 기본설계 수행 설계자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미관·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
- ②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 ③ 건축디자인 및 도시경관 등에 관한 설계의도의 구현을 위한 자문
- ④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업무

4-3-3 공사시공자 및 공사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자의 자문의견을 반영한다.

4-3-4 설계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본설계 수행 설계자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계약한다.

4-3-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공과정 중 설계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디자인검토회의를 개최하고, 디자인검토회의 자료로서 주요변경내용, 관련설계도서 등을 준비한다. 디자인검토위원회는 디자인검토회의에서 사업의 일관성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변경사항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표 4-2> 시공단계 디자인검토 주요내용

구분	디자인검토 내용	
시공단계 (설계변경 발생시)	사업의 일관성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사업의도와의 부합성 ◦ 마스터플랜, 기본설계 등 상위계획과의 적합성·연계성
	변경사항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사항의 타당성 및 적절성

제5장 추진협의회 운영

제1절 추진협의회 구성

5-1-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 사업의 추진주체인 추진협의회 구성을 지원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시민단체·관계 공무원 등 시범사업 이해관계인을 시범사업 추진과정에 참여시킨다.

5-1-2 추진협의회는 디자인총괄계획가, 담당공무원, 관련기관 및 부서 담당자, 지역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9~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추진협의회 대표는 민간위원으로 선임한다. 단, 사업 성격 및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추진협의회 인원수, 추진협의회 구성방식, 디자인총괄계획가의 추진협의회 대표 겸임여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① 디자인총괄계획가 : 시범사업 관련 업무 총괄·조정
- ② 담당 공무원 : 시범사업을 전담하는 부서의 실무담당자로 구성되며 사업전반의 행정지원 총괄
- ③ 관련기관 및 부서 담당자 : 사업성격에 따라 세무서, 철도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담당자는 추진협의회의 일원으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의견 조정 및 협의절차 담당
- ④ 주민대표 : 해당지역 거주자로 주민의 의견수렴 및 의견조정 등 담당
- ⑤ 시민단체 등 지역전문가: 해당지역 시민단체 또는 사업과 관련된 성격의 지역 단체, 지역 소재 대학 등에 소속된 지역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건축·도시 조성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디자인코디네이터', '공공건축가'등으로 시범사업에 대해 의견제시 및 전문적 자문 담당

■ 추진협의회 구성방식 (예시)

- ▶ (1차년도 : 마스터플랜 수립 단계) 관련기관 및 부서 담당자 등을 중심으로 상시적으로 관련기관 및 부서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전문가,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방향 설정
- ▶ (2차년도 : 거점사업 설계(계획) 단계) 사업 대상지역의 주민대표 및 지역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되, 원활한 사업추진과 의견수렴, 주민역량 강화 등을 위해 추진협의회와는 별도로 주민조직을 구성할 수 있음

5-1-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진협의회 등 관련주체의 원활한 의견수렴과 지역주민의 사업추진 주체로서의 역량강화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제2절 추진협의회 역할 및 운영

5-2-1 추진협의회 기능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 ①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 제시
- ② 거버넌스 구축 및 관련 주체들의 의견수렴
- ③ 시범사업 홍보 및 사업정보관리
- ④ 시범사업 관련 국내외 사례 조사
- ⑤ 시범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에 대한 자체평가 및 자료구축
- ⑥ 그 밖에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2-2 추진협의회 대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①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수렴된 의견이 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디자인 총괄계획가와 협력하여 사업추진
- ② 수립된 사업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사업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의견교환

5-2-3 추진협의회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추진 중 단계별 디자인검토 및 모니터링 요구에 응하며 관련 자료(예산 사용 내역 등)제출 및 보고 등을 충실히 수행한다.

5-2-4 추진협의회는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기록을 성실히 축적하여 향후 사업의 공개적인 평가와 홍보에 이용하고, 사업추진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보고서 출판 등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한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한다.

5-2-5 추진협의회는 시범사업 종료 시까지 운영하되, 사업종료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민간전문가 운영

제1절 민간전문가 자격 및 위촉

6-1-1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도시 관련 전문가로서 시범사업의 총괄·조정업무를 담당하는 디자인총괄계획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위촉한다.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범사업 공모 시 사업 성격에 적합한 예비 총괄계획가를 지정하여 응모하거나, 시범사업 선정 후 총괄계획가 후보자의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 ② 국토교통부는 해당 전문가의 자격 및 경력사항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추천 총괄계획가 기준」에 의거하여 자격을 검증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중복성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총괄계획가를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 ③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총괄계획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거나 추천한 예비총괄계획가 또는 총괄계획가 후보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디자인총괄계획가를 지정하여 통보한다.

<표 6-1> 지방자치단체 추천 디자인 총괄계획가 기준

구분	세부내용
건축·도시 조성 사업의 총괄계획가 및 계획수립 책임자 등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만들기 등 각종 사업을 전담한 코디네이터 또는 총괄계획가 ◦ 지방자치단체 건축·도시 관련 마스터플랜, 지역활성화 계획, 경관계획 수립 등의 책임자로 참여했던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하여 선임된 공공건축가, 코디네이터, 디자인 어드바이저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디자인위원회 등의 심의위원이 아닌 지역의 건축·도시 조성을 위해 별도로 위촉한 외부전문가

6-1-2 디자인검토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2인으로 구성·운영하며,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하여 건축·도시·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6-1-3 디자인총괄계획가와 디자인검토위원회는 위촉기간 동안 다른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의 디자인총괄계획가, 디자인검토위원, 용역수행주체 등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2절 민간전문가 역할 및 권한

6-2-1 디자인총괄계획가의 역할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 ① 기획안 작성을 주관하고 계획수립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총괄·조정한다.
- ② 시범사업 성격에 따라 계획수립 및 설계단계 등의 발주방식 및 과업지시서를 검토하여 최종 승인하고, 용역수행주체의 선정과정에 의견을 제시한다.
- ③ 계획수립 및 조정방식, 디자인 관리방식을 결정한다.
- ④ 설계 및 시공단계의 설계변경 및 기타 계획안 수정·변경을 검토·승인 한다.
- ⑤ 의사결정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디자인총괄계획가의 의견이 우선하도록 한다.
- ⑥ 기타 세부권한 및 역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별도 조정이 가능하다.

6-2-2 디자인검토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① 시범사업의 기획부터 시공단계까지 추진과정의 적절성 등에 대한 디자인검토를 통해 추진단계별로 디자인총괄계획가의 구상을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조인자 역할을 수행한다.
- ② 디자인총괄계획가와 지방자치단체, 계획수립 업체 등과의 이견 발생 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③ 모니터링 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제7장 행정지원

제1절 행정의 역할

7-1-1 정부(국토교통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① 시범사업 업무지침 제시
- ② 디자인총괄계획가, 디자인검토위원 등 민간전문가 지원
- ③ 계속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
- ④ 시범사업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⑤ 시범사업의 총괄관리 및 행정지원, 홍보

7-1-2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① 디자인총괄계획가의 효율적 역할수행을 위한 행정지원
- ② 시범사업의 행정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지정 및 필요시 지원조직 구성
- ③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지원
- ④ 디자인검토 회의에 대한 일정, 예산, 행정 등 전반적인 준비
- ⑤ 다양한 정부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건축·도시·조경 등의 조성사업과 연계 방안 마련 및 사업간 네트워크 구축
- ⑥ 계획수립을 위한 해당 지역의 디자인정책방향 제시 및 기초자료 조사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정보수집과 제공
- ⑦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 ⑧ 지역 건축디자인기준의 설정(필요시)
- ⑨ 시범사업 추진과정에 실무담당자 변경을 최소화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순차적인 교체를 통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
- ⑩ 계획수립을 위한 발주방식 결정에 있어 디자인총괄계획가의 의견을 수용하며, 용역 주체의 선정과정에 디자인총괄계획가, 디자인검토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7-1-3 (공공건축가, 지역건축디자인기준의 설정 등)

-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관리·운영과 지역의 건축·도시환경의 품격향상 등을 위하여 국가가 제시하는 건축디자인기준을 토대로 지역의 건축 디자인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 ② 또한, 건축·도시관련 사업에 대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조정 및 조언을 수행하기 위하여 디자인총괄계획가를 해당 지자체의 공공건축가로 위촉할 수 있다.
- ③ 특히 설계비지원 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파급효과 확대를 위해 사업기간 내에 지역 건축디자인기준 설정, 지방자치단체 내 디자인전담부서 설치, 공공건축가 위촉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절 예산집행의 범위 및 기준

7-2-1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범사업 국고지원금을 당해 연도 시범사업 관련 기획안 작성, 마스터플랜 및 계획수립, 민간전문가 보수지급, 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7-2-2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고지원금의 100분의 10 내외에서 민간전문가 보수를 지급한다.

- ① 민간전문가(디자인총괄계획가, 디자인검토위원)의 보수는 관련 보수기준에 의거하여 1개월 또는 2개월 마다 지급하고, 2개월마다 보수지급 내역을 모니터링 연구진에 제출한다.
- ② 민간전문가 보수는 당해 연도의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등을 준용하며, 사전검토수당, 회의수당, 교통비로 구성된다.
- ③ 사전검토수당은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기술사(건설 및 기타)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회의수당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하며, 교통비는 민간전문가의 거주 지역에 따라 당해 연도 공무원 여비기준에 의거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 ④ 디자인총괄계획가의 보수는 사전검토, 회의참석 등 활동내역에 근거하여 지급하되, 월별 적정 업무량은 사전검토 및 회의참석 각 4회를 권장한다.
- ⑤ 디자인검토위원의 보수는 업무지침에 규정된 디자인검토회의의 참여 실적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7-2-3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범사업 국고지원금의 100분의 5 내외에서 추진협의회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7-2-4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7일 이내에 예산집행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고,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 일정에 맞춰 예산사용 실적도 함께 보고한다.

제8장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제1절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의 추진

8-1-1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고하는 내용을 토대로 시범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실시한다.

8-1-2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효과율도출하여 사업의 개선 및 보완에 필요한 의견서를 제공하고 차년도 시범사업추진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8-1-3 모니터링 결과는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평가에 반영한다.

8-1-4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니터링팀이 요구할 때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8-1-5 모니터링팀은 디자인검토 회의참석 및 추진협의회 면담 등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8-1-6 모니터링팀은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하는 문의사항에 대한 조언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2절 모니터링 절차 및 방법

8-2-1 (기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단계 모니터링)

- ① 기획단계에서는 추진협의회 구성의 충실성, 일정계획의 적정성, 발주방식 및 과업지시서의 합리성, 디자인검토 자료의 충실성 등을 위주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 ② 마스터플랜 수립단계에서는 디자인검토 자료의 충실성, 이전 디자인검토결과에 반영여부, 향후 추진계획의 적절성 등을 위주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 ③ 기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단계에서의 모니터링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선정된 시범사업의 성격 및 추진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표8-1> 기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단계 모니터링 기준

구 분	기 준	지 표
추진협의회의 운영	사업추진과정 기록의 충실성	추진협의회, 디자인검토, 실무진 협의 등 시범사업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정의 기록 여부 및 작성한 기록물은 충실한지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충실성	사업추진에 필요한 주체의 참여와 역할부여가 적절하며, 각각의 참여주체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상호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졌는지
디자인검토	일정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일정이 계획수립에 있어서 무리가 있거나 불합리하지는 않은지
	발주방식 및 과업지시서의 합리성	용역 발주방식이 합리적이고 발주서의 과업지시서 내용은 기획의도를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디자인검토 자료의 충실성	디자인검토 자료가 충실히 작성되고 제시되었는지
	디자인검토 결과 반영의 충실성	디자인 검토의견이 계획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향후 추진계획의 적절성	디자인 검토 회의 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사업추진 내용	지자체의 추진의지	시범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한 피드백 및 모니터링 수행에 무리가 없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졌는지
	추진사항 보고의 충실성 및 홈페이지 활용도	월간추진실적 보고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정보공유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된 시범사업 홈페이지를 활발히 활용하였는지
	예산사용의 적절성	시범사업의 취지와 체계에 따라 보조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8-2-2 (설계단계 모니터링)

- ① 설계발주단계에서는 일정계획의 적정성, 발주방식 및 과업지시서의 합리성, 디자인검토 자료의 충실성 등을 위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② 설계단계에서는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이전 디자인검토결과의 반영 여부, 디자인검토 자료의 충실성, 시범사업으로서의 파급효과 등을 위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③ 설계단계에서의 모니터링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선정된 시범사업의 성격 및 추진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표8-2> 설계단계 모니터링 기준

구분	기준	지표
추진협의회 운영	사업추진과정 기록의 충실성	추진협의회, 디자인검토, 실무진 협의 등 시범사업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정의 기록여부 및 작성한 기록물은 충실한지
	추진협의회 운영의 충실성	각각의 참여주체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졌는지
디자인검토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계획내용이 상위계획의 방향과 내용에 부합하는지
	일정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일정이 계획수립에 있어서 무리가 있거나 불합리하지는 않은지
	발주방식 및 과업지시서의 합리성	용역 발주방식이 합리적이고 발주시의 과업지시서 내용은 상위계획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디자인검토 자료의 충실성	디자인검토 자료가 충실히 작성되고 제시되었는지
	향후 추진계획의 적절성	디자인검토회의 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디자인검토 결과 반영의 충실성	디자인검토 의견이 계획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사업추진 내용	지자체의 추진의지	시범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한 피드백 및 모니터링 수행에 무리가 없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졌는지
	시범사업으로서의 파급효과	설계 매뉴얼 작성 등 시범사업의 성과확산을 위한 노력이 충분한지
	추진사항 보고의 충실성 및 홈페이지 활용도	월간추진실적보고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정보공유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된 시범사업 홈페이지를 활발히 활용하였는지
	예산사용의 적절성	시범사업의 취지와 체계에 따라 보조금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8-2-3 (시공단계 모니터링)

- ① 모니터링팀은 시공단계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디자인검토회의가 개최될 경우, 디자인검토 회의에 참석하여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디자인검토 자료의 충실성 등을 위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② 시공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은 설계단계에서의 모니터링 기준을 준용한다.

제3절 시범사업 성과관리

8-3-1 (사업추진실적 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디자인총괄계획가 선정 후부터 별도 서식에 따라 단계별 추진현황 및 실적, 단계별 디자인검토 결과 및 개선·보완 결과 등을 담은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매월 초 국토교통부 통보 및 국토환경 디자인 시범사업 홈페이지에 등재한다.

8-3-2 (홈페이지 활용을 통한 관련정보의 공유)

- ① 추진협의회는 시범사업 기획·계획과정 중 참고한 국·내외 사례, 단계별 추진 현황 및 실적, 추진협의회 논의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수시로 등재하여 시범사업 추진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 ② 홈페이지 활용결과 실적을 사업평가 시에 적용할 수 있다.
- ③ 모니터링팀은 디자인검토회의 회의록, 디자인검토위원의 검토의견, 조치사항에 대한 디자인검토회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등재한다.

제4절 시범사업 평가

8-4-1 국토교통부는 사업기간 종료에 앞서 시범사업의 평가, 성과공유 및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시범사업 평가회를 개최하며, 정확한 개최일정은 평가 1개월 전에 국토교통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한다.

8-4-2 각 지방자치단체는 평가 이전에 최종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시범사업 평가회를 통해 시범사업 결과물을 발표한다.

8-4-3 계획수립단계 최종보고서는 기획안 및 마스터플랜, 추진협의회 운영과정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설계단계 최종보고서는 주요 설계도서와 설계 매뉴얼, 향후 추진계획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8-4-4 국토교통부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 결과물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절 시정조치

8-5-1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디자인총괄계획가의 역할 및 권한 존중, 디자인검토회의 절차 엄수 등 본 업무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에 근거하여 기 지급된 국고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8-5-2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을 통해 특별한 문제점이 드러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다.

8-5-3 평가 결과, 성과가 현저하게 저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신청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